

앞서가는 공제, 신뢰받는 공제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,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55(代), FAX 031-258-3931
업 무 3 과 과 장 : 김 회 순

문서번호 : 경기 업무 제 57 호

시행일자 : 2022. 01. 11 .

수 신 : 각 조합원사

참 조 : 공제(보험)담당자

선결			지시		
접	일자		결 재 · 공 람		
	시간				
수	번호				
처 리 과					
담 당 자					

제 목 : 경영개선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부 제10회 서면운영위원회('21.12.14) “경영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”의결과
관련입니다.
3.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경영개선방안을 기 추진하였으나, 현재의
적자추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여 경영개선 추가조치로 '22.03.01일 이후 갱신 및
신규 적용 차량부터 적용될 “책임공제 할증 개선” 및 '23.01.01일 이후 갱신 및 신규
적용 차량부터 해당되는 “사고유무 및 특별할증 평가기간 조정”에 대해 금번 본부
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, 불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개선된 사항을 숙지하시어
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- 이면 계속 -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, 경수회관6층) TEL 031-242-3355(代), FAX 031-258-3931
업 무 3 과 과 장 : 김 희 순

□ 주요 개선사항

구 분		현 행	변경 후	시행일
책임공제	합증유보 적용중지	최저 60% ~ 최고 100%	최저 60% ~ 최고 200% : 책임공제 합인합증율을 일반공제와 동일하게 200% 적용	'22.03.01
	납부유형	일시납만 가능	분납가능 : 일반공제 분납과 동일하게 적용가능	
	대폐차 합인요율 차액분	책임요율 최고 100%까지 적용	책임요율 최고 200%까지 적용 ☞ 단, 제도시행일('22.3.1)이전까지 요 율차액분 수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차액분 추징배제	
사고유무 및 특별합증 평가기간조정		2년 : 전계약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과거 2년간	3년 : 계약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	'23.01.01

※ 위 요율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조합 계약담당자에게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경영개선 추진 방안에 따른 업무 시행지침. “끝”

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
경 기 지 부 장



경영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업무 시행 지침

1. 제도변경 근거

- '21년도 제10회 서면운영위원회(2021. 12. 14) "경영개선추진에 관한 사항" 원안 결의

2. 제도변경 내용

◆ 변경요지

최근 극심한 경영악화('18~'21. 10월까지 4년간 1,807억 원 적자 발생)로 그간 손보사 대비 악화된 조건으로 운영되어온 요율제도를 정상 조치코자 함

가. 「책임공제 할증유보」 적용 중지

□ 변경내용

- '97년도 IMF 경기불황 당시 화물업계 어려움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인하 요구에 따라 '98년도부터 시행해온 「책임공제 할증 유보적용(100%한도)」을 중지하고,
 - 시행일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책임공제 할인·할증율을 일반공제와 동일하게 200%까지 정상 적용 (→ 특별할증은 현행과 같이 책임공제에 미적용)
 - ※ 상기제도는 과거 「책임공제 할증유보적용(할인)」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고·요율의 소급적용과는 무관
- 변경 주요 요인
 - (공제경영 악화) 대인사고 증가로 인한 지속적 경영악화 ⇨ 현 시점에서 책임공제 할증 유보적용은 불합리
 - (요율적용 이원화) 책임·일반요율 적용 이원화
 - ☞ 손보사 및 타공제의 경우 담보구분 없이 일원화된 요율(특별할증 포함) 적용

- (국토부 지적사항) 책임공제 할증유보로 인해 사고차량의 위험이 무사고 차량에게 까지 전가되는 문제점(형평성결여)과, 적정요율(위험도 평가) 산정이 불가한 점을 국토교통부 합동점검에서 지적*

* '21년도 국토부 합동점검('21.11.1 ~11.19) 지적 사항 : 할인·할증제도 운영 부적정

□ 적용방법

- 시행일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「책임공제 할증 유보적용(100%한도)」 없이 할인·할증요율 적용 (→ 제도환원)

< 적용예시 >

구 분		2020.03.01. ~2021.03.01	2021.03.01. ~2022.03.01	2022.03.01. ~2023.03.01	2023.03.01. ~2024.03.01	비 고
사고유무		대인8급, 대물600만원 사고	무사고 (1년차)	무사고 (2년차)	무사고 (3년차)	
현행	책임	100%	100%	100%	100%	
	일반	100%	160%(130+30)	160%(130+30)	100%	2년평가
조정	책임	100%	100%	130%	130%	책임할증
	일반	100%	160%(130+30)	160%(130+30)	160%(130+30)	3년평가

□ 유의사항

- (대폐차할인제도 관련) 시행일 이후 책임공제 할인·할증요율이 200%까지 적용되므로 차액분 산출시 책임공제 요율차액분 발생

- 단, 시행일前 요율 차액분이 기수납된 계약의 경우 업무 안정성 및 조합원 민원방지 차원에서 책임차액분 재산출(추정) 배제*

* 제도 시행일前 요율 차액분이 수납된 경우, 추정 배제됨

내 용	적용방법
■ 요율차액분을 수납하였으나 제도시행일 (’22. 3. 1)이전까지 차량을 대체하지 못한 경우	기산출 내역 인정 ■ 책임공제 차액분 재산출 및 추정 배제

□ 시행일

- '22. 3. 1자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

나. 사고유무 및 특별할증 평가기간 조정

□ 조정내용

○ “사고유무평가기간” 및 “특별할증평가기간”을 현행 2년→3년으로 조정

○ 조정 주요 요인

- (사고경각심 고취) 지속적인 사고건 증가로 인한 공제금 증가가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 ⇒ 사고 경감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시점
- (분담금 수입 정체) 사고율증가 대비 할인·할증 평균적용율의 증가는 미미
 - 매해 사고율이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반의 핵심이 되는 평균할인할증률은 정체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적자 발생이 불가피 ⇒ 평가기간 조정 필요

☞ 10년간 사고율 대인29.9%↑, 대물17.3%↑증가 / 평균할인할증률 책임1.2%↑, 일반4.4%↑증가

□ 적용방법

- 시행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는 조정된 할인·할증 평가방법에 따라 “사고유무평가기간” 및 “특별할증평가기간”을 전계약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 평가하여 적용

< 적용예시 >

구 분		2020.01.01. ~2021.01.01	2021.01.01. ~2022.01.01	2022.01.01. ~2023.01.01	2023.01.01. ~2024.01.01	비 고
사고유무		대인8급, 대물600만원 사고	무사고 (1년차)	무사고 (2년차)	무사고 (3년차)	
현행	책임	100%	100%	100%	100%	
	일반	100%	160%(130+30)	160%(130+30)	100%	2년평가
조정	책임	100%	100%	100%	130%	책임할증
	일반	100%	160%(130+30)	160%(130+30)	160%(130+30)	3년평가

□ 유의사항

○ (대폐차 할인제도 관련) 대폐차 할인제도 요율차액분 산출 평가기간 조정

<요율차액분 산출 평가기간 기준>

- ▶ 사고평가기간 : 전계약의 공제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현계약의 만료일까지
- ▶ 사고유무평가기간 : 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과거 3년 2개월
- ▶ 특별할증평가기간 : 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과거 3년 2개월

○ 장기간 유지되어온 “사고유무평가기간” 및 “특별할증평가기간”을 조정 (2년→3년)함으로써 조합원의 혼란이 예상되는바,

- 시행일까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조합원이 갱신계약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둠

□ 시행일

○ '23. 1. 1.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